

총리 관저와 후생노동대신에게

- 동경지방법원민사제 38 부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신속하게 고시를 개정하여 소록도갱생원과 대만낙생원의 입소자가 보상법에 의한 지급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라는 의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문장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르게 문장을 작성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총리 관저와 후생노동대신에게 의견을 전합시다!

내각총리대신 小泉純一郎 귀하

후생노동대신 川崎二郎 귀하

2005년 10월 25일 한센병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동경지방법원민사부제 38 부는, 대만낙생원입소자에 대한 처분 취소를 명령하여 원고들의 완전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동 지방법원민사 3 부는 같은 입장에 처한 한국의 소록도갱생원입소자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한센병보상법은 일본의 한센병근절정책이 한센병환자였던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가져온 역사를 감안하여 그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하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일본의 절대적격리정책에 의해 요양소 입소를 강요당한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환자였던 사람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 민사부 38 부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며, 기각한 민사제 3 부의 판결은 보상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들의 평균연령은 81 세를 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갈라졌다는 것을 이유로 해결을 연장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대응여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기와 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1. 동경지방법원민사제 38 부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고시를 개정하여 소록도갱생원과 대만낙생원의 입소자가 보상법에 의한 지급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